

서울특별시

B.12.기
청년12-10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391-4 / 전송 731-6790

문서번호 주개 30321 - 483
 시행일자 1992.12.28.
 (경유) (제 1 안)
 수신 내부 결재
 참조

취급		시 장						
보존		홍길						
주택국장	전결							
주택개량과장	F	법무담당관 심사판 (고시안심사)						
개량 2 계장	L	협조분재관						
기안	김 중 경	<table border="1" style="font-size: small;"> <tr> <td>작성</td> <td>1992.12.28</td> <td>429</td> </tr> <tr> <td>합계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작성	1992.12.28	429	합계		
작성	1992.12.28	429						
합계								

제목 주택개량개발 수유제1구역 면적정정및 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**10** **김** **2**

1. 건설부고시 제227호 (87.6.17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774호 (88.9.20)로 사업계획결정된 수유제 1주택개량개발구역에 대하여,
 2. 구역경계 변경없는 단순면적정정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요인이 있어 도시개발법 제4조, 제5조,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, 제56조,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단순면적정정및 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코져 하오니 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첨부 : 주택개량개발구역 면적정정및 사업계획변경결정도서 1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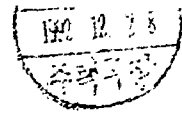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장



(제 2 안)
 수신 : 총무처장관
 제목 : 관보 게재의뢰

1. 우리시 수유제 1주택개량개발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보 게재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게재구분 : 고시
 - 나. 게재연명 : 주택개량개발구역 면적정정및 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
 - 다. 법적근거 : 도시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 제8조와 동법시행령 제58조

첨부 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

서울특별시

(제 3 안)

수신 : 도봉구청장

참조 : 주택과장

제목 : 주택개량개발 수유제 1구역 면적정정및 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통보

1. 주택30321 -3292 (92.12.8)호와 관련임.

2. 귀구관내 수유제 1주택개량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, 제5조,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, 제56조,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구역 경계변경없는 단순 면적정정및 사업계획을 변경결정고시하였기 통보하러 ~~관련업무에 참고하기 바디다~~

✓ 관계도서를 주택과,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지적과에 통보할 것.

첨부 : 1. 고시문 사본 3부

2. 사업계획변경결정 도서 3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 4 안)

수신 : 건설부장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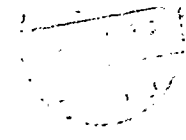
참조 : 주택개발과장

제목 : 주택개량개발구역 면적정정및 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보고

1. 건설부고시 제227호 (87.6.17)로 구역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774호 (88.9.20)로 사업계획결정된 수유제 1주택개량개발구역에 대하여

2. 구역경계변경없는 단순면적정정 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요인이 있어 도시개발법 제4조, 제5조,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, 제56조,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단순면적정정및 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

- 첨부 : 1. 고시문 사본 1부.
2. 사업계획변경결정도서 1부. 끝.



서울특별시

(제 5 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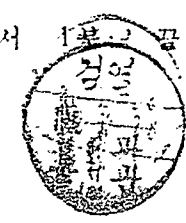
수신 : 수신처 참조

제목 : 주택개량제개발 수유제 1구역 면적정정및 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 홍보

1. 주택개량제개발 수유제 1구역에 대하여 구역경계 변경없는 단순면적정정및 사업계획을 별첨내용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하였기 홍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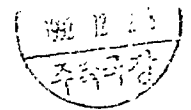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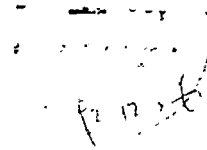
첨부 : 1. 고시문 사본 1부.

2. 주택개량제개발구역 면적정정및 사업계획변경결정도서 1부. 끝.



주택개량과장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



수유제1 주택개량재개발구역 편적정정 및 사업계획 변경결정

1. 건설부고시 제227호(86.6.17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774호(88.9.20)로 사업계획결정된 수유제1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
2.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구역 변경결정(단순면적정정)하고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3의2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도봉구 도시정비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92. 12. .

서울특별시 장

가. 재개발사업의 명칭 : 수유제1 주택개량재개발구역 (사업)

나. 구 역 :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2동 240번지 일원

다. 면 적 :

기 정	변 경	비 고
70,024 m ²	69,827.7 m ²	감 196.3 m ²

라.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: 별첨(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도봉구 도시정비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 비치도서와 같음)

마. 건축계획 : 별첨

바. 변경사유 : 분할축량결과 구역경계 변경없는 단순면적정정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

인본대조필